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40
----------	-----

제안이유

- 정부 및 도의 기구개편에 따른 관련부서와 직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령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골자

- 기구개편에 따른 관직명칭 개정
(통상산업부→산업자원부, 통상산업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행정부지사→경제통상국장)
- 정의중 “연쇄화사업”을 “체인사업”으로 하고 “연쇄화사업자”를 “체인사업자”로 하며, “도·소매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
- 용자심의위원회위원중 “도의회산업경제위원회위원 1인, 기금취급은행장이 추천한 소속임직원, 도기업지원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개정
- 사후관리중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조사할 수 있다”로 개정

첨 부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하고, 동조 제8호중 “연쇄화사업자”를 “체인사업자”로 하며, “도·소매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연쇄화사업”을 “체인사업”으로 하며, 동조 제9호중 “도·소매진흥법 제26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로 하고, 동조 11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6호중 “연쇄화사업자”를 “체인사업자”로 한다.

제9조 제2호중 “도·소매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연쇄화”를 “체인”으로 한다.

제13조 제3항중 “행정부지사”를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사업담당국장”을 “충북신용보증조합이사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2.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장
4. 도의회산업경제위원회 위원 1인
5.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6. 기금취급은행장이 추천한 소속임직원
7. 도기업지원과장
8.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제15조 제1항중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조사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4.....		
8. “연쇄사업자”라 함은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쇄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체인사업자”.....	유통산업발전법	체인사업
9.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 도·소매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9.	유통산업발전법	
1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		산업자원부장관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③ 도지사는 통상산업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제2항 각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①		
6. 연쇄화사업자 직·가맹점		6. 체인사업자.....		
제9조(기금의 사용 등)		제9조(기금의 사용 등)		
③기금 중 중소기업구조개선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2.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점포시설현대화 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2. 유통산업발전법.....		체인.....

현행	개정안
<p>제13조(유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②는 (생략) ③ 위원장은 <u>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업담당국장이 된다.</u>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자로 한다. 1. 충북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 2. 중소기업진흥공단충북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장 4. 산업기술정보원 충북지역정보센터소장 5. 상공회의소회장 1인 6.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p> <p>⑤ (생략)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15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 자금의 관리실태를 <u>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제17조(결산 및 보고)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도의회 및 <u>통상산업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유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②(현행과 같음) ③.....경제통상국장 부위원장은 <u>충북신용보증조합이사장이 된다.</u> ④..... 1. <u>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u> 2. <u>중소기업진흥공단충북지역본부장</u> 3. <u>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장</u> 4. <u>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1인</u> 5. <u>상공회의소 사무국장</u> 6. <u>기금취급은행장이 추천한 소속임직원</u> 7. <u>도기업지원과장</u> 8.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p> <p>⑤(현행과 같음)</p> <p>제15조(사후관리) ①<u>조사할 수 있다.</u></p> <p>제17조(결산 및 보고) ②<u>산업자원부장관</u>..... </p>